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12. 8.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월 지급액 (천 원)
애 국 지 사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	7,924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4,219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3,336
	4. 건국포장 서훈자	2,390
	5. 대통령표창자	1,571
독립유공자의 유족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3,511
	나. 배우자 외의 유족	3,040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2,586
	나. 배우자 외의 유족	2,533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2,106
	나. 배우자 외의 유족	2,057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479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468
	5. 대통령표창자의 유족	
	가. 배우자	1,000
	나. 배우자 외의 유족	980

[별표 2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지급대상	월 정지금액 (천원)
애 국 지 사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	1,778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1,778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1,538
	4. 건국포장 서훈자	1,188
	5. 대통령표창자	693
독립유공자의 유족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733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262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811
	나. 배우자 외의 유족	755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328
	나. 배우자 외의 유족	279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277
	나. 배우자 외의 유족	266
	5. 대통령표창자의 유족	
	가. 배우자	307
	나. 배우자 외의 유족	287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